

호텔외식경영학과 김현주 교수



학습목표

학습소개

학습내용

정리하기



**가맹 사업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학습내용

학습소개

학습내용

정리하기



가맹 사업법 내용



정보 공개서

학습소개

학습내용

정리하기

제1장 총칙

✓ 제2조 정의

1. 가맹 사업	가맹 본부가 가맹점 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 서비스표, 상호, 간판 그 밖의 영업 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 기준이나 영업 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부재료 포함)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 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 사업자는 영업 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 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의 대가로 가맹 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지속적인 거래 관계를 말한다.
----------	---

학습소개

학습내용

정리하기

제1장 총칙

✓ 제2조 정의

2. 가맹 본부	가맹 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 사업자에게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
3. 가맹점 사업자	가맹 사업과 관련하여 가맹 본부로부터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 받은 사업자
4. 가맹 희망자	가맹 사업과 관련하여 가맹 본부나 가맹 지역 본부와 상담하거나 협의하는 자
5. 가맹점 운영권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 본부의 가맹 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을 운영할 수 있는 계약상의 권리
6. 가맹금	명칭이나 지급 형태가 어떻든 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 가. 가입비, 입회비, 가맹비, 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 사업자가 영업 표지의 사용 허락 등 가맹점 운영권이나 영업 활동에 대한 지원, 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 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나.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 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 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 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학습소개

학습내용

정리하기

제1장 총칙

✓ 제2조 정의

6. 가맹금	명칭이나 지급 형태가 어떻든 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 다.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 받을 당시에 가맹 사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가맹 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정착물, 설비, 상품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 명목으로 가맹 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라.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 본부와 계약에 의하여 허락 받은 영업 표지의 사용과 영업 활동 등에 관한 지원, 교육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가맹 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마. 그 밖에 가맹 희망자나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 본부에 지급하는 모든 대가
7. 가맹 지역 본부	가맹 본부와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맹점 사업자의 모집, 상품 또는 용역의 품질 유지, 가맹점 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영업 활동의 지원, 교육, 통제 등 가맹 본부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사업자

학습소개

학습내용

정리하기

제1장 총칙

✓ 제2조 정의

8. 가맹 중개인	가맹 본부 또는 가맹 지역 본부로부터 가맹점 사업자를 모집하거나 가맹 계약을 준비 또는 체결하는 업무를 위탁 받은 자
9. 가맹 계약서	가맹 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조건 등에 있어 가맹 본부 또는 가맹점 사업자(이하 가맹 사업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특수한 거래 조건이나 유의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을 기재한 문서
10. 점포 환경 개선	가맹점 점포의 기존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을 새로운 디자인이나 품질의 것으로 교체하거나 신규로 설치하는 것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거나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모두 포함
11. 영업 지역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 계약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지역

학습소개

학습내용

정리하기

정보 공개서

번호	수록 내용	비고
1	가맹 본부의 일반 현황	
2	가맹 본부의 가맹 사업 현황(가맹점 사업자의 매출에 관한 사항 포함)	
3	가맹 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사실 1)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2) 사기, 횡령, 배임 등 민사 소송 패소 판결, 민사상 화해한 경우 3) 사기, 횡령, 배임 등 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	
4	가맹점 사업자의 부담	
5	영업 활동에 관한 조건과 제한	
6	가맹 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 기간	
7	가맹 본부의 경영 및 영업 활동 등에 대한 지원과 교육, 훈련에 대한 설명	
8	가맹 본부의 직영점(가맹 본부의 책임과 계산하에 직접 운영하는 점포) 현황 (직영점의 운영 기간 및 매출에 관한 사항 포함)	

정보 공개서



학습소개

학습내용

정리하기

정보 공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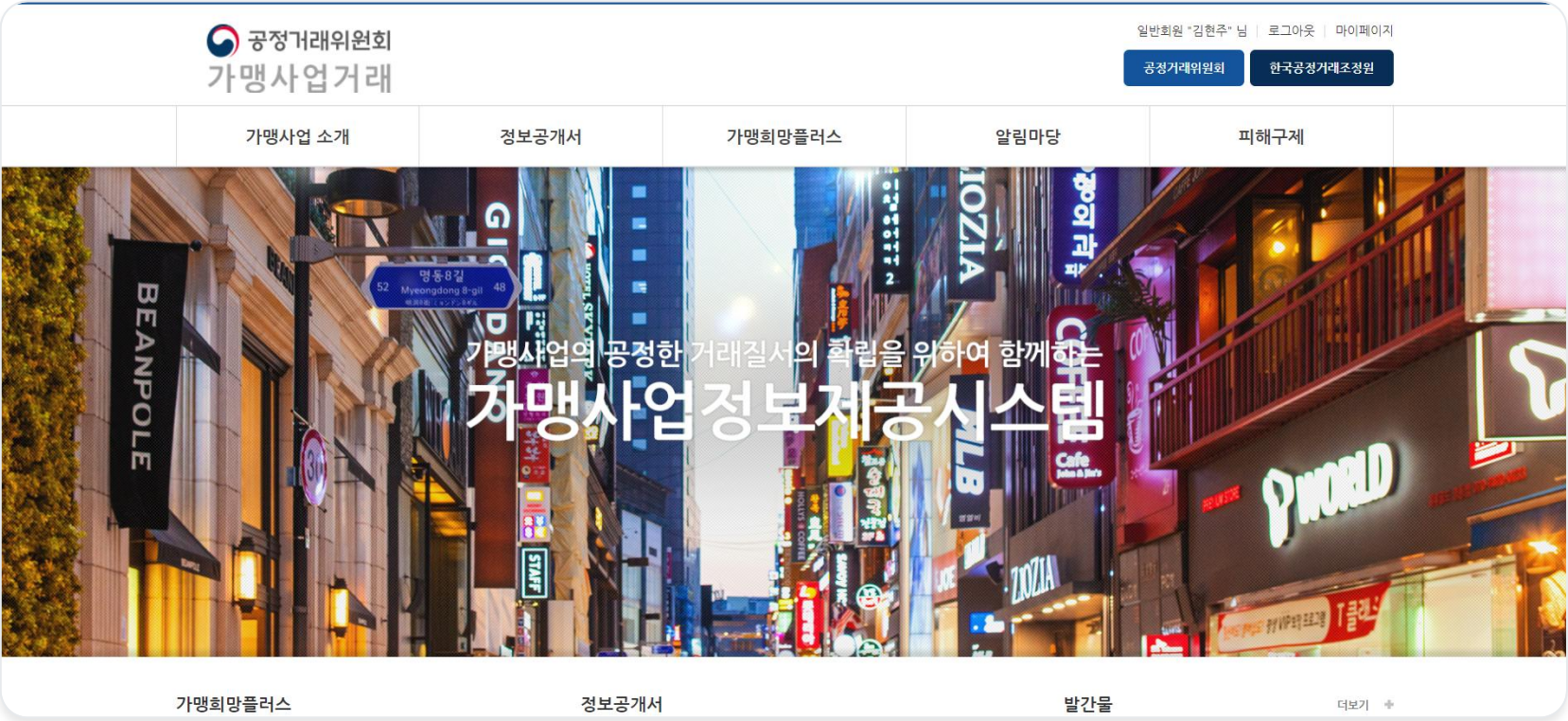


학습소개

학습내용

정리하기

정보 공개서



학습소개

학습내용

정리하기

정보 공개서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일반회원 "김현주" 님 | 로그아웃 | 마이페이지
 공정거래위원회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 소개	정보공개서	가맹희망플러스	알림마당	피해구제
---------	-------	---------	------	------

[홈](#) > [정보공개서](#) > [정보공개서 열람](#)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함께하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정보공개서
 정보공개서 열람 >

정보공개서 열람






검색조건 선택 **영업표지** **BBQ** 업종 **대분류** 중분류 **검색**

정보 공개서

학습소개

학습내용

정리하기

정보공개서

정보공개서 열람

정보공개서 열람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가맹본부 일반 현황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업종
(주)제너시스비비큐	BBQ	김태천	치킨
법인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번호	대표팩스 번호
1995.09.01	1995.09.01	02 - 3403 - 9033	02 - 3403 - 9059
등록번호	최초등록일	최종등록일	
20161241	2016.12.19	2024.01.24	

주소

우 : 05833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64 제너시스빌딩

사업자유형

법인

법인등록번호

110111 - 1193153

사업자등록번호

207 - 81 - 43555

가맹본부 재무상황

단위: (천원)

연도	자산	부채	자본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2	327,808,493	206,276,373	121,532,121	423,457,028	64,127,063	75,503,934

정보 공개서

11,000	4,180	5,000	70,609	90,789
인테리어 비용 단위 (천원)				
단위면적(3.3㎡)당 인테리어 비용	기준점포면적(㎡)		인테리어 비용	
2,809	50		42,130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가맹계약 기간 단위 (년)				
계약기간				
최초		연장		
3		2		
정보공개서 보기 즐겨찾기 목록으로 돌아가기				

학습소개

학습내용

정리하기

정보 공개서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161241 www.bbq.co.kr
 정보공개서 최초등록일 2016년 12월 19일
 정보공개서 최종등록일 2022년 11월 2일

BBQ

정 보 공 개 서

주식회사 제너시스 비비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주식회사 제너시스비비큐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연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난 때까지는 가맹본부나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대로 66(문정동) 제너시스빌딩

1. 가맹 사업법 개정안(2021. 4. 29) – 가맹 본부의 직영점 운영(제6조의3제1항)

학습소개

학습내용

정리하기

- ① 앞으로 새롭게 가맹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가맹 본부는 직영점을 1개 이상, 1년 이상 운영한 후에 가맹점을 모집하여야 한다. 직영점 운영 경험이 없으면 정보 공개서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가맹 본부가 새로운 브랜드를 출시하여 정보 공개서를 신규 등록하는 경우에만 적용,
이미 등록한 정보 공개서에 따라 가맹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 ② 가맹 본부는 직영점 운영 기간 및 매출액 등을 정보 공개서에 기재하고, 관련 정보를 가맹 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2021.10.30 시행

1. 가맹 사업법 개정안(2021. 4. 29) – 가맹 본부의 직영점 운영(제6조의3제1항)

학습소개

학습내용

정리하기



제3조 (소규모 가맹 본부에 대한 적용 배제 등)

- ①
 - 1 6개월간 가맹금 총액이 100만 원 미만
 - 2 가맹 본부 연간 매출액이 5천만 원 미만(단, 가맹점 5개 이상 제외)인 경우

가맹 사업 전 직영점 1년 이상 운영한 경우, 가맹 본부 연간 매출액 2억 미만(2021.11.19 가맹 사업법 시행령 개정)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의2부터5까지(가맹점 사업자의 준수 사항), 제7조(정보 공개서의 제공 의무 등), 제9조(허위, 과장된 정보 제공 등의 금지), 제10조(가맹금의 반환) 및 제15조의2(가맹점 사업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 등)는 모든 가맹 사업 거래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가맹 사업법 개정안(2021. 4. 29) - 소규모 가맹 본부의 법 적용 확대(제3조제2항)

학습소개

학습내용

정리하기

- ① 소규모 가맹 본부도 정보 공개서를 등록하고, 이를 가맹 희망자에게 제공하도록 함
- ② 가맹금을 가맹 본부가 직접 수령 하지 않고 시중 은행 등 제3의 기관에 예치하도록 함

개정 이유

소규모 가맹 본부일수록 시장에 정보가 부족하고, 가맹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 소규모 가맹 본부로 인해 가맹 점주가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

3. 법 개정 기대 효과

학습소개

학습내용

정리하기

- 1 가맹 본부가 직영점 운영을 통해 사업 방식을 검증한 경우에만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실 가맹 사업 운영으로 인한 가맹 점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
- 2 소규모 가맹 본부와 거래하는 가맹 희망자가 정보 공개서를 제공 받음으로써 합리적 창업 결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가맹금을 금융 기관에 예치하도록 함으로써 가맹금 보호를 위한 안전 장치를 마련할 수 있음

3. 법 개정 기대 효과

학습소개

학습내용

정리하기



제2장 가맹 사업 거래의 기본 원칙

제5조 (가맹 본부의 준수 사항)

- ① 가맹 사업의 성공을 위한 사업 구상
- ②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 관리와 판매 기법의 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 ③ 가맹점 사업자에 대하여 합리적 가격과 비용에 의한 점포 설비의 설치, 상품 또는 용역 등의 공급
- ④ 가맹점 사업자와 그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 ⑤ 가맹점 사업자의 경영·영업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조언과 지원
- ⑥ 가맹 계약 기간 중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 지역 안에서 자기의 직영점을 설치하거나 가맹점 사업자와 유사한 업종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의 금지
- ⑦ 가맹점 사업자와의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분쟁 해결 노력

3. 법 개정 기대 효과

학습소개

학습내용

정리하기



제2장 가맹 사업 거래의 기본 원칙

제6조 (가맹점 사업자의 준수 사항)

- ① 가맹 사업의 통일성 및 가맹 본부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 ② 가맹 본부의 공급 계획과 소비자의 수요 충족에 필요한 적절한 재고 유지 및 상품 진열
- ③ 가맹 본부가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제시하는 적절한 품질 기준의 준수
- ④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품질 기준의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 가맹 본부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사용
- ⑤ 가맹 본부가 사업장의 설비와 외관, 운송 수단에 대하여 제시하는 적절한 기준의 준수
- ⑥ 취급하는 상품·용역이나 영업 활동을 변경하는 경우 가맹 본부와 사전 협의
- ⑦ 상품 및 용역의 구입과 판매에 관한 회계 장부 등 가맹 본부의 통일적 사업 경영 및 판매 전략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유지와 제공

3. 법 개정 기대 효과

학습소개

학습내용

정리하기



제2장 가맹 사업 거래의 기본 원칙

제6조 (가맹점 사업자의 준수 사항)

- ⑧ 가맹점 사업자의 업무 현황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확인과 기록을 위한
가맹 본부의 임직원 그 밖의 대리인의 사업장 출입 허용
- ⑨ 가맹 본부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사업장의 위치 변경 또는 가맹점 운영권의 양도 금지
- ⑩ 가맹 계약 기간 중 가맹 본부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의 금지
- ⑪ 가맹 본부의 영업 기술이나 영업 비밀의 누설 금지
- ⑫ 영업 표지에 대한 제3자의 침해 사실을 인지하는 경우 가맹 본부에 대한 영업 표지
침해 사실의 통보와 금지 조치에 필요한 적절한 협력

3. 법 개정 기대 효과

학습소개

학습내용

정리하기



제3장 가맹 사업 거래의 공정화

제6조의2(정보 공개서의 등록 등)

- ① 가맹 본부는 가맹 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 공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 거래 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의3(정보 공개서 등록의 거부 등)

3. 법 개정 기대 효과

학습소개

학습내용

정리하기



제3장 가맹 사업 거래의 공정화

제6조의5(가맹금 예치 등)

- ① 가맹 본부는 가맹점 사업자로 하여금 가맹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맹점 사업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맹 본부의 가맹금 수령 시점(법제6조의5③)

1. 가맹점 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한 경우
2. 가맹 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경과한 경우

3. 법 개정 기대 효과

학습소개

학습내용

정리하기



제3장 가맹 사업 거래의 공정화

제11조(가맹 계약서의 기재 사항 등)

① 가맹 본부는 가맹 희망자가 가맹 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제2항 각호의 사항이 적힌 문서(계약서)를 가맹 희망자에게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는 1, 2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1. 가맹 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가맹금 예치 합의 포함)
2. 가맹 희망자와 가맹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3. 법 개정 기대 효과

학습소개

학습내용

정리하기

✓ 제3장 가맹 사업 거래의 공정화

제11조(가맹 계약서의 기재 사항 등)

② 가맹 계약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각호	내용
1	영업 표지의 사용권 부여에 관한 사항
2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 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
3	가맹점 사업자에 대한 교육, 훈련, 경영 지도에 관한 사항
4	가맹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5	영업 지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
6	계약 기간에 관한 사항
7	영업의 양도에 관한 사항
8	계약 해지의 사유에 관한 사항
9	가맹 희망자 또는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개월(가맹점 사업자가 2개월 이전에 가맹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가맹 사업 개시일)까지의 기간 동안 예치 가맹금을 예치 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는 사항 (가맹점 사업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 가능)

3. 법 개정 기대 효과

학습소개

학습내용

정리하기

✓ 제3장 가맹 사업 거래의 공정화

제11조(가맹 계약서의 기재 사항 등)

② 가맹 계약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각호	내용
10	가맹 희망자가 정보 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 거래사 자문을 받은 경우 이에 관한 사항
11	가맹 본부 또는 가맹 본부 임원의 위법 행위 또는 가맹 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 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 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에 관한 사항
12	가맹 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가맹 본부 또는 가맹 본부가 지정한 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할 경우 그 강제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 용역, 설비, 상품, 원재료 또는 부재료, 임대차 등의 종류 및 공급 가격 산정 방식 에 관한 사항(24.2.9 개정)
13	그 밖에 가맹 사업 당사자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

③ 가맹 본부는 가맹 계약서를 가맹 사업의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3. 법 개정 기대 효과

학습소개

학습내용

정리하기

제11조의2(표준 가맹 계약서) 공정 거래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불공정 거래 행위의 금지)

제12조의2(부당한 점포 환경 개선 강요 금지 등)

제12조의3(부당한 영업 시간 구속 금지)

제12조의4(부당한 영업 지역 침해 금지)

제12조의5(보복 조치의 금지)

1. 제22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
2. 제32조의2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서면실태조사에 대한 협조
3. 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대한 협조

제12조의6(광고, 판촉 행사의 실시 및 집행 내역 통보)

3. 법 개정 기대 효과



3. 법 개정 기대 효과

학습소개

학습내용

정리하기



제3장 가맹 사업 거래의 공정화

제13조(가맹 계약의 갱신 등)

- ① 가맹 본부는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 계약 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 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가맹점 사업자의 계약 갱신 요구권은 최초 가맹 계약 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 계약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 ③ 가맹 본부가 제1항에 따른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가맹점 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 법 개정 기대 효과

학습소개

학습내용

정리하기

표 10-6 가맹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각호	내용
1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 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2	다른 가맹점 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 조건이나 영업 방침을 가맹점 사업자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3	가맹 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 본부의 중요한 영업 방침을 가맹점 사업자가 지키지 아니한 경우 가.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 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 면허, 허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 나.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 공법 또는 서비스 기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 사업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법 개정 기대 효과

학습소개

학습내용

정리하기

✓ 제3장 가맹 사업 거래의 공정화

제14조(가맹 계약 해지의 제한)

- ① 가맹 본부는 가맹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 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 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 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8. 3.〉

제14조의2(가맹점 사업자 단체의 거래 조건 변경 협의 등)

- ① 가맹점 사업자는 권익 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체 (이하 “가맹점 사업자 단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3. 법 개정 기대 효과

학습소개

학습내용

정리하기



제3장 가맹 사업 거래의 공정화

제15조의2(가맹점 사업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 등)

- ① 가맹 본부는 가맹점 사업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7.>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 계약
2. 가맹점 사업자 피해 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기관의 채무 지급 보증 계약
3. 제15조의3에 따라 설립된 공제 조합과의 공제 계약

제15조의3(공제 조합의 설립)

- ① 가맹 본부는 제15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공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정 거래 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공제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3. 법 개정 기대 효과

학습소개

학습내용

정리하기

✓ 제3장 가맹 사업 거래의 공정화

제15조의4(가맹 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간 협약 체결의 권장 등)

- ① 공정 거래 위원회는 가맹 본부와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 사업 관계 법령의 준수 및 상호 지원·협력을 약속하는 자발적인 협약을 체결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제4장 분쟁의 조정 등

제16조(가맹 사업 거래 분쟁 조정 협의회의 설치)

- ① 가맹 사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항에 따른 한국 공정 거래 조정원(이하 “조정원”이라 한다)에 가맹 사업 거래 분쟁 조정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3. 법 개정 기대 효과

학습소개

학습내용

정리하기



제4장 분쟁의 조정 등

제27조(가맹 거래사)

- ① 공정 거래 위원회가 실시하는 가맹 거래사 자격 시험에 합격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 수습을 마친 자는 가맹 거래사의 자격을 가진다.

제28조(가맹 거래사의 업무)

가맹 거래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 8. 13., 2017. 4. 18.〉

- ① 가맹 사업의 사업성에 관한 검토
- ② 정보 공개서와 가맹 계약서의 작성·수정이나 이에 관한 자문
- ③ 가맹점 사업자의 부담, 가맹 사업 영업 활동의 조건 등에 관한 자문
- ④ 가맹 사업 당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이나 이에 대한 자문
- ⑤ 가맹 사업 거래 분쟁 조정 신청의 대행 및 의견의 진술
- ⑥ 정보 공개서 등록의 대행

3. 법 개정 기대 효과

학습소개

학습내용

정리하기



가맹 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5(광고·판촉 행사의 실시 등)

- ① 가맹 본부는 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라 광고·판촉 행사의 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가맹점 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 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문서, 내용 증명 우편, 전자 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또는 판매 시점 관리 시스템(POS) 등을 통해 동의 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맹점 사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11. 16.>
- ② 법 제12조의6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 1. 광고의 경우 : 100분의 50
 - 2. 판촉 행사의 경우: 100분의 70
- ③ 가맹 본부 및 가맹점 사업자가 법 제12조의6제1항 본문에 따른 광고·판촉 행사의 약정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가맹 계약과 별도로 체결해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체결하는 광고·판촉 행사의 약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 1. 광고나 판촉 행사의 명칭 및 실시 기간
 - 2. 광고나 판촉 행사의 소요 비용에 대한 가맹점 사업자의 부담 비율 및 부담 한도**[본조신설 2022. 6. 7.]**

Q&A

학습소개

학습내용

정리하기

Quiz 1

가맹금이란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 본부와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을 때 내는 계약금을 말한다.

O

X

Q&A

학습소개

학습내용

정리하기

Quiz 2

가맹 본부는 가맹점 사업자로 하여금 어떤 경우에도
가맹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O

X

학습정리

학습소개

학습내용

정리하기



정리1

가맹 사업이란 가맹 본부가 가맹점 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 서비스표, 상호, 간판 그 밖의 영업 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 기준이나 영업 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부재료 포함)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 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 사업자는 영업 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 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의 대가로 가맹 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지속적인 거래 관계를 말한다.



정리2

가맹 본부의 가맹 사업 현황은 정보 공개서에 수록하고 공정 거래 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정리3

가맹 사업 거래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가맹 사업 거래 분쟁 조정 위원회를 설치한다.

학습정리

학습소개

학습내용

정리하기



정리4

새롭게 가맹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가맹 본부는 직영점을 1개 이상,
1년 이상 운영한 후에 가맹점을 모집하여야 한다.
직영점 운영 경험이 없으면 정보 공개서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학습소개

학습내용

정리하기

마무리 및 다음 차시 예고

10주차에서

가맹 사업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1주차에서

외식 프랜차이즈 모델 점포의 구축과 운영

참고자료

학습소개

학습내용

정리하기

-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 <https://franchise.ftc.go.kr/index.do> 공정거래위원회 가맹 사업 거래 홈페이지

